

「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
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정성문)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
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
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
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
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
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
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
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